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나2167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이선영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모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4.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14632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2021. 10.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제1예비적으로 2021. 10. 말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제2예비적으로 2021. 11.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21. 11. 12. 접수 제1491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각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각 사실조회회신을 면밀히 살펴봐도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의 나.항 첫 문장을 “소외 회사는 2021. 10.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1,3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은 계약금으로 500,000,000원을, 중도금 없이 2022. 1. 25.까지 잔금으로 8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졌다. 원고와 피고들은 2021. 10. 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21. 11. 3.로 수정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로 바꾸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21. 10. 말경(제1예비적 청구)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인 2021. 11. 12.(제2 예비적 청구)에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새로운 합의가 새로운 처분행위가 되고, 위 각 합의 당시 전득자인 피고들이 악의였으므로 위 각 합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합의로 잔금 지급일을 수정하였으나, 매매계약 당사자 · 목적물 · 매매대금이 모두 동일하여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잔금 지급 기일만을 앞당긴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별개의 새로운

합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인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가 잔금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들에게 마쳐준 것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였다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잔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잔금 지급일의 수정이나 채무인수로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을 새로운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창국, 판사 김자림, 판사 윤이환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남양주시 임야 3834㎡
2.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 66㎡에 대한 지분 7095분의 3255
3.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 215㎡에 대한 지분 215분의 32
4.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 260㎡에 대한 지분 536분의 94.5679
5.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 204㎡에 대한 지분 15분의 2.9349
6.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 201㎡에 대한 지분 202분의 24
7.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 181㎡에 대한 지분 31537분의 17520
8.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 46㎡에 대한 지분 52분의 16

- 이 상 -

